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병원급 의료기관(정신병원 제외)]

구 분		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법령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교육대상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전원 (의료기관의 장 포함)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방법		★개별 온라인 교육 ★집합 온라인 교육 ★집합 강사 교육			
주요 온라인 교육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in) 등 → 안내문 18쪽 참조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edu.ncrc.or.kr) 등 → 안내문 23~30쪽 참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등 → 안내문 1쪽 참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OHI (duty.kohi.or.kr) 등 → 안내문 3쪽 참조
제출서류		★개별 온라인 교육: ①교육결과보고서, ②이수자 명단, ③이수증 ★집합 온라인 교육: ①교육결과보고서, ②이수자 명단, ③내부기안 [③-1교육계획, ③-2교육결과(교육사진 포함), ③-3참석자 서명부] ★집합 강사 교육 : ①교육결과보고서, ②이수자 명단, ③내부기안 [③-1교육계획, ③-2교육결과(강사프로필 및 교육자료, 교육사진 포함), ③-3참석자 서명부] ※ 교육사진: 집합 온라인 교육은 교육생과 교육영상이 보이게 촬영, 집합 강사 교육은 교육생과 교육강사가 보이게 촬영			
제출기간		2026. 12. 1. ~ 2027. 1. 8. (기일엄수)			[참고사항]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제출방법		goojj99@korea.kr (미추홀구보건소 의약관리팀 병원담당자, ☎ 032-880-5323)			
기 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문서는 미추홀구보건소 홈페이지 > 소식/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정신병원 종사자 및 응급구조사 제외 (담당 부서 별도 안내 예정)			